

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·공시

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『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·공시합니다.

2024년 6월 27일

남 해 군



1. 조정·공시일 : 2024. 6. 27.

2. 개별공시지가 조정내역 (단위:원/m²)

토지소재지			당초 결정지가(원)	조정내역	이의신청 반영여부
읍면	리	지번			
남해	북변	255-2	557,700	557,700	미반영
남해	북변	255-5	557,700	557,700	미반영
남해	북변	256-1	557,700	557,700	미반영
남해	북변	257-1	557,700	557,700	미반영
설천	문항	936	39,200	23,900	반영
설천	문항	937	44,500	27,300	반영
설천	문항	938-6	41,800	25,900	반영
설천	문항	940	31,100	19,100	반영

3. 조정·공시 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(☎055-860-302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의신청자에게는 조정된 결과를 개별 통지합니다.